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, 화학물질 등록·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·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172호, 2023. 1. 3. 일부 개정, 2024. 1. 4. 시행)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

3. 주요내용

가.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·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, 위임·위탁 등 근거 마련(안 제21조, 제22조 및 제31조)

- 1)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·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

2)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·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3)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접수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고,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·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.

나.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화학물질을 등록·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(별표6)

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등록·신고한 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00만원, 2회 위반 시 800만원, 3회 이상 위반 시 1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합의 전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

6의2.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

제22조에 제7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

9의2. 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

제3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
제31조제4항에 제2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

별표 6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법 제33조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4호의2	600	800	1000
아.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7호	600	800	1,000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)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22조(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) 법 제39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</p> <p>1. 삭제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1조(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변경 신고에 관한 업무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의2.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</u>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의2.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</u></p>

8.·9. (생략)

<신설>

10. (생략)

제3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(이하 “지방환경관서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

1. 삭제

2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삭제

5. ~ 8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한국환경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1. ~ 2의2. (생략)

<신설>

8.·9. (현행과 같음)

9의2. 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

10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 신고의 접수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
2의3.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

<p>3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	<p><u>른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783